

서울특별시 마포구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

2024. 4. 15.
복지도시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: 2024. 4. 2. 마포구청장

나. 회부일자: 2024. 4. 3.

다. 상정일자: 제267회 임시회 제1차 복지도시위원회(2023. 4. 15.)

상정, 심사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□ 제안설명자 : 마포구청장(건강동행과장)

가. 제출이유

마포구에서 시행한 ‘출산축하금 사업’ 과 ‘가사서비스 사업’ 이 「저출산·고령사회기본법」에 따라 2022년 보건복지부의 ‘첫만남 이용권 사업’ 과 2023년 ‘서울형 가사서비스 지원사업’ 과 중복, 확대되어 그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

나. 주요내용

가. 출산축하금, 가사서비스 관련 조항 삭제

나. 구청장 및 구민의 책무 규정

다. 표창 대상자 구체화

다. 참고사항

1) 관계법령 : 「저출산·고령사회기본법」

2)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

3) 기타

가) 입법예고 : 2024. 2. 29 ~ 2024. 3. 20. (의견 없음)

나) 행정규제심사 검토결과 : 원안 동의

다)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결과 : 원안 동의

라) 자치법규 성별영향평가 결과 : 해당 없음

3. 검토의견

-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로 추진되던 ‘출산축하금 사업’ 과 ‘가사지원서비스 사업’ 이 「저출산·고령사회기본법」 과 「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」 에 따라 ‘첫만남 이용권 사업’ 과 ‘서울형 가사서비스 지원사업’ 으로 전환하고 아울러, 이러한 전환이 현행 조례의 중복 지원 금지 조항에 위반되어 구 차원의 사업을 폐지하고 상위 법령에 맞는 출산 및 양육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임.
- 이러한 개정사항은 국가적인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의 변화로 이해되며 효율적인 국가 주도 정책에 호응하는 조치로 볼 수 있음.
- 다만, 조례가 제정과 폐지를 자주하는 것은 지역사회의 혼란이 야기될 수 있고, 행정의 비효율성이 발생되며 입법 경제성이 떨어지므로 정책을 기획할 때에는 정부 및 관계기관과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마련하여 조례 제정의 신중을 기하여야 하겠음.
-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만의 시책으로 추가 지원하지 못하는 아쉬움은 있지만, 재정의 효율적 운용과 정책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로 이해되며 다른 복지 프로그램이나 지원 정책을 통해 출산율 증가와 인구 유입을 유도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이므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없 음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8. 기 타 : 없 음

[관 계 법 령]

「저출산·고령사회기본법」

제10조(경제적 부담의 경감)

-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의 임신·출산·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 [개정 2012.5.23] [[시행일 2012.11.24]]
-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강구 및 지원을 위하여 자녀의 임신·출산·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의 통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.
-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200만원 이상의 첫만남이용권(이하 "이용권"이라 한다)을 출생아동에게 지급할 수 있다.
-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수급아동이 「아동복지법」 제52조제1항제1호의 아동양육시설이나 같은 항 제4호의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조치되고 있는 경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2조의 자산형성지원사업에 따라 개설된 출생아동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여 지급할 수 있다.
- ⑤ 이용권을 지급받으려는 보호자(아동의 친권자·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서 아동을 사실상 보호·양육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)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호자의 대리인은 출생아동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이용권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.
- ⑥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이용권의 지급 대상·금액·방법, 이용기한 및 지급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